

# 한국부동산원 정관

제정 1969. 03. 07  
개정 1969. 09. 04  
개정 1970. 04. 30  
개정 1971. 04. 30  
개정 1973. 02. 09  
개정 1974. 02. 13  
개정 1976. 10. 26  
개정 1977. 02. 17  
개정 1978. 02. 23  
개정 1980. 02. 27  
개정 1982. 04. 10  
개정 1983. 04. 29  
개정 1985. 03. 05  
개정 1986. 03. 15  
개정 1989. 04. 04  
개정 1990. 04. 10  
개정 1993. 03. 26  
개정 1995. 04. 14  
개정 1996. 03. 21  
개정 1999. 04. 20  
개정 2000. 04. 27  
개정 2000. 09. 22  
개정 2001. 05. 04  
개정 2001. 07. 11  
개정 2004. 01. 15  
개정 2004. 04. 09  
개정 2004. 09. 03  
개정 2005. 04. 18  
개정 2006. 03. 09  
개정 2007. 06. 29  
개정 2008. 02. 11  
개정 2009. 04. 15

개정 2010. 02. 16  
개정 2011. 04. 08  
개정 2013. 09. 04  
개정 2014. 05. 30  
개정 2015. 02. 11  
개정 2015. 07. 20  
전부개정 2016. 09. 01  
개정 2020. 12. 08  
개정 2022. 08. 0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부동산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0.12.8>

**제3조(사무소)** ① 부동산원은 주된 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를 대구광역시에 둔다.<개정 2020.12.8>

② 부동산원은 업무상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2.8>

**제4조(업무)** ① 부동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제3호(담보평가서 검토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4호(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 업무는 제외한다) 업무는 해당 법령에서 업무를 위탁·대행받거나 의뢰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 수행하며, 담보평가서 검토 업무는 운영 내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개정 2020.12.8, 2022.8.3>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관리 업무
3.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담보평가서 검토,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등 업무
4.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업무,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등 정부 정책지원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 업무
5.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업무
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검토 등에 관한 업무
8.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주무관청이 의뢰하는 사전표본기준가격 조사 및 관련 업무
9. 그 밖에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에서 정한 업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의뢰하는 업무
11. 부동산원 보유 자산에 대한 임대사업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부동산원은 「이사회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나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20.12.8>

③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시행, 시설물 유지관리(미화·경비 등을 포함한다)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 결의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자회사의 설립·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신설 2022.8.3>

**제5조(공고방법)** 부동산원의 공고는 부동산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보급되는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0.12.8>

**제6조(경영공시)** 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8>

**제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자본금)** ① 부동산원의 자본금은 「한국부동산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8>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부동산원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개정 2020.12.8>

## 제2장 주식

**제9조(주식의 종류 등)** ① 부동산원의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개정 2020.12.8>

② 부동산원은 주주의 요청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8>

**제10조(발행가능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부동산원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1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개정 2020.12.8>

**제11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수)** 부동산원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백8십만주로 한다.<개정 2020.12.8>

**제12조(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 ① 정부가 부동산원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발행시기,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8>

② 정부 이외의 자가 부동산원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발행시기,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0.12.8>

**제13조(신주인수권의 제한)** 부동산원이 발행할 주식수의 총수 중 미발행 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이를 특정주주에게 인수시킬 수 있다.<개정 2020.12.8>

**제14조(주식명의개서)** 주식명의를 개서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8>

1. 배서에 의하여 양수할 때에는 주권
2.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양수할 때에는 주권과 양도증서
3. 상속, 유증, 합병,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때에는 주권과 그 취득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제15조(질권등록등)** ① 부동산원의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 소정의 청구서에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8>

② 질권이나 신탁재산의 표시의 말소 또는 전질이나 질권이전의 등록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16조(주주명부기재)** 전2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부동산원은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주권 뒷면에 원장이 증빙한 후 이를 청구자에게 환부한다.<개정 2020.12.8>

**제17조(주권의 재교부)** ①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 소정의 청구서에 상실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8>

② 주권을 오손한 때 또는 주권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 소정의 청구서에 그 주권을 첨부하여 부동산원에 제출하고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오손에 의하여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12.8>

**제18조(수수료)**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에 관한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시 또는 상실, 오손 기타 사유로 인한 대주권의 교부시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부동산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8>

**제19조(주소 및 인감신고)** ① 주주,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부동산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8>

② 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소 또는 공증에 의한 대리인을 정하여 부동산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8>

③ 전2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정대리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제출이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부동산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0.12.8>

**제20조(명의개서등의 정지)** ① 부동산원은 매 결산기의 익일부터 그 기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명의개서 및 질권에 관한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를 정지한다.<개정 2020.12.8>

② 임시주주총회 또는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주일 전에 미리 공고한 후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상당한 기간 정지할 수 있다.

## 제3장 주주총회

**제21조(주주총회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권자가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장으로 한다. 원장 유고시에는 제35조제3항의 직무대행자를 의장으로 한다.

**제23조(통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의 2주일 전에 각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대리인)** 주주는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원의 주주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개정 2020.12.8>

**제26조(의결정족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7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사록)**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원본은 본사에, 사본은 지사에 비치한다.

## 제4장 임원과 직원

**제29조(임원의 수)** ① 임원은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임면)** ① 원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12.8>

③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8.3>

⑤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비전제시 및 조직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자
2. 부동산 및 경영·경제 등에 대한 전문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
3. 조직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
5. 기타 관련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⑥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2.8.3>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

3. 기타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 자

⑦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20.12.8>

1.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윤리의식
3. 부동산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되지 못한다<개정 2020.12.8, 2022.8.3>

1. 부동산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제6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2년 이내에 부동산원과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3. 부동산원의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⑨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8, 2022.8.3>

**제3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 이외의 상임이사를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32조(선임비상임이사)** ① 비상임이사 중 1인을 선임비상임이사로 호선한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및 그 밖에 부동산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개정 2020.12.8>

**제3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0.12.8>

② 임원이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4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0.12.8>

② 임원은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35조(이사의 직무)** ① 원장은 부동산원을 대표하여 업무 전반을 집행한다. 다만, 부동산원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원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부동산원을 대표한다.<개정 2020.12.8>

② 상임이사는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집행한다.<개정 2020.12.8>

③ 원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상임이사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 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비상임이사,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부동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개정 2020.12.8>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37조(임원의 보수)** ① 상임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총 지급한도를 정하고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직무수당 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상임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은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8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인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39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 및 감사는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원장 이외의 상임이사 및 직원은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40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8>

## 제5장 이사회

**제4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부동산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20.12.8>

②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 유고시에는 제35조제3항의 직무대행자를 의장으로 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42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운영위원회 등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며,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43조(이사회외 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회의일의 7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이사회외 결의 및 의사록 작성)**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12.8>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본사에 비치한다.

## 제6장 회계

**제45조(사업연도)** 부동산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12.8>

**제46조(재무제표의 작성)** 원장은 매 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제47조(영업보고서의 작성)** 원장은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손익금의 처리)** ①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개정 2020.12.8>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②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개정 2020.12.8>

③ 부동산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한다.<개정 2020.12.8>

**제49조(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부동산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



### **부칙<1971.4.30>**

1971년의 영업년도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로 한다.

### **부칙<1983.4.29>**

본 정관은 198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985.3.5>**

본 정관은 198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989.4.4>**

본 정관은 198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0.4.10>**

본 정관은 199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3.3.26>**

본 정관은 199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5.4.14>**

본 정관은 199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6.3.2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1999.4.20>**

본 정관은 199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0.4.2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은 2001년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종전 정관의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2000.9.2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2001년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종전 정관의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2001.5.4>**

본 정관은 200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1.7.11>**

본 정관은 2001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4.1.15>**

본 정관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4.4.9>**

본 정관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4.9.3>**

본 정관은 200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5.4.18>**

본 정관은 200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6.3.9>**

본 정관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7.6.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2008.2.1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한 선임절차에 의하

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4.15>**

본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16>**

본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8>**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4>**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30>**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11>**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0>**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6.9.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① 감정원은 설립과 동시에 종전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재산에서 종전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납입자본금은 감정원의 설립과 동시에 자본금의 출자로 보고 이를 설립시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③ 감정원의 설립 당시 종전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 감정원의 설립 당시 종전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를 감정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감정원의 설립 당시 종전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보며, 임원 중 상임감사위원은 제29조제1항의 감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임원의 임기는 종전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내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내규는 이를 감정원의 내규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정원의 내규 중 법령 및 이 정관에 저촉되는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에 의한 감정원의 내규는 감정원 설립 후 3월 이내에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감정원의 2016년 사업연도는 종전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으로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 부칙<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원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감정원의 명칭은 부동산원의 명칭으로 본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한국감정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감정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부동산원이 행한 행위 또는 부동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감정원의 임원 및 직원은 부동산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 정관으로 정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내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한국감정원의 내규는 이를 부동산원의 내규로 본다.

**제5조(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부동산원의 2020년 사업연도는 종전 한국감정원으로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 **부칙<2022.8.3>**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